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32
----------	------

2017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경자(강서) 의원(찬성자 11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2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9일
- 라. 상정결과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2월 27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통합적 지침을 제공하고, 건립중인 박물관의 자료 수집에 관한 조항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자료 수집에 대한 지원조항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박물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임.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 박물관의 위원회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며, 위원회 설치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박물관 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제4항)
- (2) 개별박물관 외 박물관 건립 추진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규정 추가(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 (3)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6조제6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3) 기 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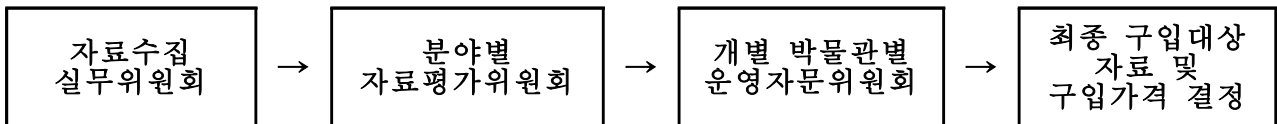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지원 및 건립 중인 박물관의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나. 조례 개정 배경

- 현행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 또는 기증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에 따라 서울시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6년 6월 이상목 의원(자유한국당,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 조례는 운영 중이거나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자료 구입, 기증 및 기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개별 박물관의 자료 구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과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1> 개별 박물관의 자료 구입 절차



그러나 건립 추진 중인 박물관의 자료 구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박물관 개관 이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강서구 제2선거구)이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동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외에도 박물관의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 및 여비 지원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다. 개정안 내용

- 안 제1조(목적) 중 “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을 “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으로 개정함은 동 조례의 제1조 이후의 조문과 시행규칙에서 “개별 박물관¹⁾ 및 건립 중인 박물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시킨 것임.

<표 2> 안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u>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u> 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u>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u> 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별 박물관”으로 명시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 필수이므로, 본 명칭은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안 제3조(자료 구입)의 경우, 현재 개별 박물관별로만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건립 중인 박물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수정한 것이며, 안 제3조제4항의 경우, 박물관의 자료 수집과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국내외 여비 지원을 신설하였는데, 박물관 자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²⁾를 제외하고는 타 조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문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 안 제3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자료구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u>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u>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3조(자료구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u>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u>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 안 제5조(자료의 기탁 등)제2항의 경우 안 제3조에서와 같이 건립 중인 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의해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표 4> 안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생략)</p> <p>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u>개별 박물관 별로 설치되어 있는</u>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u><삭제></u>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② 시장은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에 대한 국·내외 우수도시 견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4.>

○ 안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제1항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립 중인 박물관의 자료 수집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박물관 건립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 것임.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함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개의·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심의·의결이 일반적이나, 공공 박물관 관련 조례³⁾에서 대체로 전원합의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경우도 전원합의 심의·의결을 규정함은 신중한 결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안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u></p> <p>③ <u>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u>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u>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⑥ <u>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한다.</u></p>

○ 안 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제1항은 건립 중인 박물관도 추진 부서에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는 안 제3조(자료구입)에 따라 건립 중인 박물관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대구광역시 한의약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문경시 옛길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등

관에서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를 최종적으로 운영자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6> 안 제7조~제8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⑤ (생략)</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⑤ (생략)</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u>개별 박물관별</u>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u><삭제></u>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p>

○ 한 제13조(자료의 대여 등)제1항은 제13조를 그대로 옮겨 신설한 것이며, 안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서 명시한 ‘상업적 목적’의 구체적인 규정을 위하여 신설한 바, 2016년 7월 동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에 따라 공무,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의 예외로 인정하여 자료 대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13조제3항 신설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으로 박물관자료 관리에 대해 배상책임을 분명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의 분쟁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박물관의 자료 수집단계에서 이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되므로 객관성도 담보되었다고 사료됨.

<표 7>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17.1.19. 폐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p>제33조(손해배상) 유물을 복제하는 자가 복제 도중 유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관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p>
<p>제35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출판 등 상업적 목적의 이용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5.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여·열람·복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안 제15조(권한의 위임)의 경우 서울시 개별 박물관의 경우 개별 박물관 관장이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으나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관장이 부재하므로,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부서장이 위임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8> 안 제13조 및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삭제></p> <p>①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u> 2. <u>교육기관의 교육 목적</u> 3. <u>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u> 4. <u>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u> 5. <u>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u> <p>③ <u>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u>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u>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u></p>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건립 중인 박물관에도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공예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봉제박물관 등의 박물관 시설

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공예박물관의 경우, 건립 추진단계에서 구체적인 유물확보 방안이 취약하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던 바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7년 1월 ‘서울공예박물관 유물수집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음.

따라서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서울시의 건립 중인 박물관 등의 자료 및 유물 확보에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박물관 설립 추진 업무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안의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국내외 여비 지원 규정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위원 자격기술에서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1632
----------	---------

제안연월일 : 2017년 2월 27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2. 주요골자

-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문화재분야 전문가를”을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로 수정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u>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u> 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u> ----- ----- -----.	제1조(목적) (<u>개정안과 같음</u>)
제3조(자료구입) ① (생략)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u>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u>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생략) <u><신설></u>	제3조(자료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제3조(자료구입) ① (현행과 같음) ② (<u>개정안과 같음</u>) ③ (현행과 같음) ④ (<u>개정안과 같음</u>)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생략)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u>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u> 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삭제></u> ----- -----	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개정안과 같음</u>)

<p>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 -----.</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u>이 된다.</p> <p>③ <u>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u>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④~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 -----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 -----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이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u>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u>문화재분야 전문가</u>를 포함할 수 있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u>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한다.</u></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u>(개정안과 같음)</u></p> <p>② <u>(개정안과 같음)</u></p> <p>③ <u>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u>(개정안과 같음)</u></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⑤ (생략)</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 -----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u>(개정안과 같음)</u></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개</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u>(개정안과 같음)</u></p>

<p>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p>	<p>----- <삭제> ----- -----</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삭제></p> <p>①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u> 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u> 2. <u>교육기관의 교육 목적</u> 3. <u>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u> 4. <u>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u> 5. <u>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u></p> <p>③ <u>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u></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p> <p>① <u>(개정안과 같음)</u></p> <p>② <u>(개정안과 같음)</u></p> <p>③ <u>(개정안과 같음)</u></p>
<p>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u>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 -- <u>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u>(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을 “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을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를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 “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으로 하고, “문화재분야 전문가를”을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로 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제1항 중 “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8조 중 “개별 박물관별”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
 5. 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③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를 “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u>건립추진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u>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u>건립 중인 박물관 및 개별 박물관</u>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자료구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u>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u>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3조(자료구입)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u>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 자체 위원회 포함)</u>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생략)</p> <p>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u>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u>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자료의 기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u><삭제></u>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u>이 된다.</p> <p>③ <u>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u></p>	<p>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개별 박물관의 경우 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u></p>

<p>④~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④~⑤ (생략)</p> <p>⑥ <u>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한다.</u></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u>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⑤ (생략)</p>	<p>제7조(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u>개별 박물관 또는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에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⑤ (생략)</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u>개별 박물관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u></p>	<p>제8조(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u><삭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u></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3조(자료의 대여 등) <u><삭제></u></p> <p>① <u>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u> 2. <u>교육기관의 교육 목적</u> 3. <u>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u> 4. <u>전시·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목적</u> 5. <u>그 밖에 관장 및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 있다고 인정할 때</u> <p>③ <u>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시 자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u>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u></p>	<p>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u>시장의 권한은 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한다.</u></p>